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34891 판결

[채권자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A

변론 종결2017. 3. 22.

판결 선고2017.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74,593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0.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74,5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33419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8. "B은 원고에게 17,333,643원과 그 중 17,315,203원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3. 8. 2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2013. 10. 3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643,103원이다.

① 2013. 3. 12.까지의 원리금 : 17,333,643원

② 2013. 3. 13.부터 2013. 8. 27.까지의 지연손해금 : 956,368원($=17,315,203\text{원} \times 168/365 \times 0.12$)

③ 2013. 8. 28.부터 2017. 3. 22.까지의 지연손해금 : 12,353,092원($=17,315,203\text{원} \times (3+207/365) \times 0.2$)

④ 2017. 3. 22. 구상금채권 : 30,643,103원($=17,333,643\text{원} + 956,368\text{원} + 12,353,092\text{원}$)

다. 피고와 B은 강원도 원주시 C 임야 3471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1. 12. 13.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2012. 6. 20. 피고와 B이 합유하는 것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조합재산이나 조합채무는 없다.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는 81,568,500원이다.

라. B은 2016. 12. 8. 기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원금만 107,554,000원으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 81,568,500원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B은 피고에 대하여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원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B이 피고와의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압류명령은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인 B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조합탈퇴의 가부

1) 민법상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민법 제716조 참조),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바(민법 제719조 참조),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그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B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하는 형태로 조합을 구성한 사실, B은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이 피고와 구성한 위 조합을 탈퇴할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정산금청구

1) 무릇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B를 대위하여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2016. 9. 22.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와 B 사이에 손익분배 비율은 달리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민법 제71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와 B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1:1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조합재산이나 조합채무가 없고,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는 81,568,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6. 9. 22.에도 위 시가는 같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에 대한 B의 손익분배비율(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81,568,500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30,643,103원 중 원고가 구하는 29,874,593원 중 적은 금액인 29,874,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에게 29,874,593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정산금원의 지급을 구한 것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6. 12.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승준